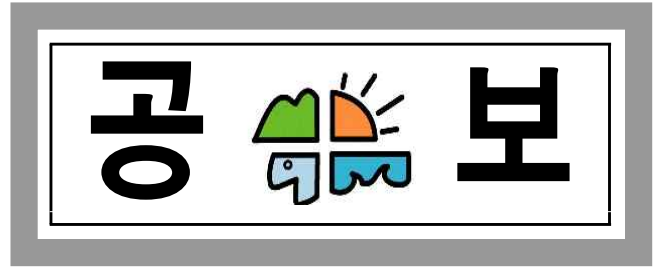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04호 2012년 6월 5일(화)

공 고

- 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2

공 고

- 대부업자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..... 4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

2012년 06월 05일

속 초 시 장

1. 사 업 명 : 건축허가(신고)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77-10번지
3.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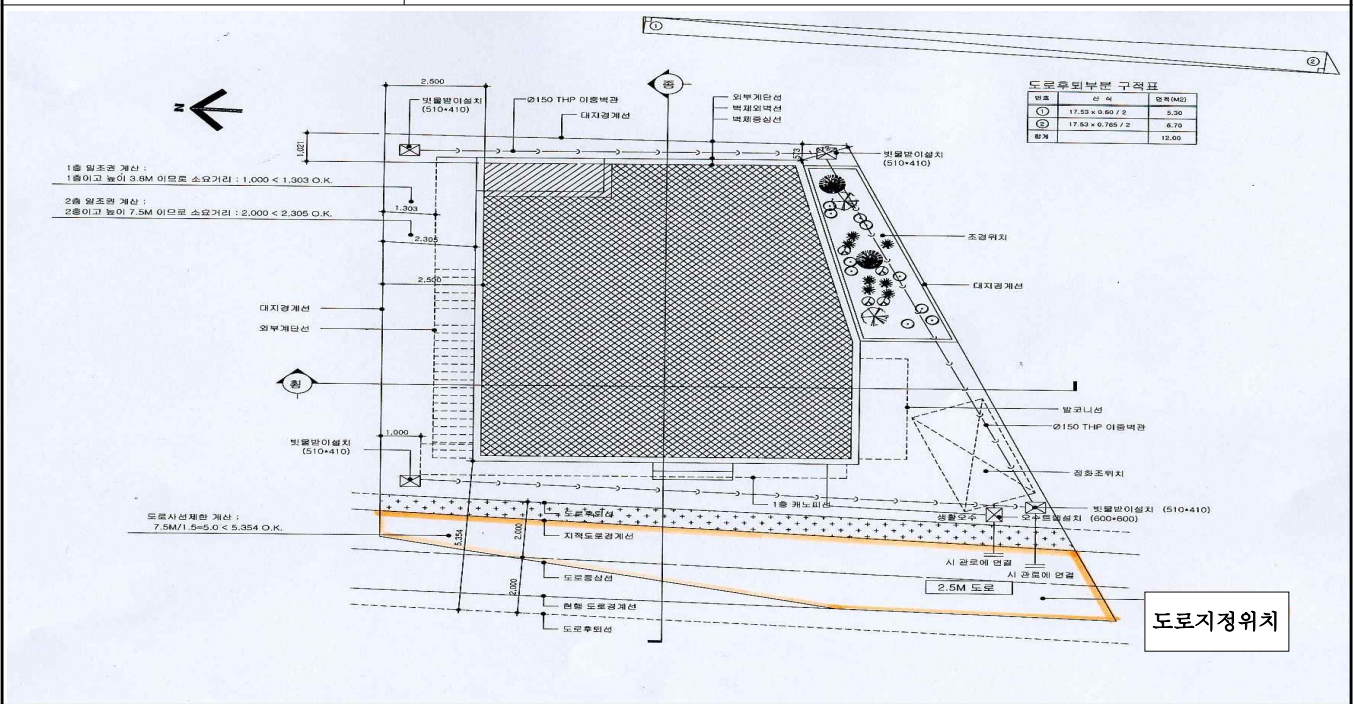
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(m ²)		소 유 자	신고번호 및 신고일	비 고
			공 부 면 적	지 정 면 적			
동명동	277-10	대	37	37	곽 만 복	2012-건축허가-37 (2012.05.25)	

위 치 도



현 황 도

축척 : NONE



대부업자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

『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해 소재확인을 위하여 동법 제13조 제2항 제6호, 동법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6. 5.

속 초 시 장

1. 공 고 명 :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2. 6. 5 ~ 2012. 7. 5(31일간)
3. 공고근거 : 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3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
4. 송달대상

등록번호	등록일	상 호	대표자 (생년월일)	소 재 지	비고
강원속초-2009-대부22	2009.11.2	팔도기업대부	홍정훈 (80.08.04)	속초시 조양동 성호아파트 202동 910호	

5. 송달 내용

대부업 등록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, 통지가 없을 경우 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(☎033-639-2351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